

공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 문서번호 : 인개택총589-1호
 공고일자 : 2019년 9월 6일
 공고기한 : 2019년 9월 6일 ~ 2019년 10월 5일

게시판 : 각 충전소

공 고 문

2019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(2019.09.05)에서 개정 승인된
 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【선거규정】

현 행	개 정
제4장 부 칙 제51조 (별칙) 4.위원의 일비는 공탁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식대를 포함한 수당을 2회 분할 지급(투표10일전 1회, 임원 등기 절차 완료후 1회)한다. ①위원장 270만원 ②간사 250만원 ③위원 230만원 단,위원회는 위원 임명후 선거업무 종료시까지로 하고 기타 어떠한 명목의 수당도 지급 할 수 없다. 결근 시에는 일일 계산하여 삭감 지급 한다.	제4장 부 칙 제51조 (별칙) 4.위원의 일비는 공탁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식대를 포함한 수당을 2회 분할 지급(투표10일전 1회, 임원 등기 절차 완료후 1회)한다. ①위원장 270만원 ②간사 250만원 ③위원 230만원 단,위원회는 위원 임명후 선거업무 종료시까지로 하고 <u>기타 운영비 및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준한다.</u> 결근 시에는 일일 계산하여 삭감 지급한다.

【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】

현 행	개 정
제5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차량지원비)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활동 차량에 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②차량지원비 지원은 선거관리위원 소유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.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활동차량의 범위(일일 최대 4대)를 결정하여 운영한다. ④차량지원비는 1일 유류보조비 1만5천	제5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차량지원비)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활동 차량에 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②차량지원비 지원은 선거관리위원 소유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.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활동차량의 범위(일일 최대 4대)를 결정하여 운영한다. ④차량지원비는 1일 유류보조비 1만5천

<p>원, 차량유지비 5천원으로 정한다.(단, 강화, 도서벽지 운행포함)</p>	<p>원, 차량유지비 5천원으로 정한다.(단, 강화, 도서벽지 운행포함)</p>
<p>제6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식대) 선거관리규정 제51조(별칙) 4항에 의거 지급되지 아니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 할 수 있다.</p> <p>①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시간 종료후 (오후 18시이후) 야근시 식비를 1인당 7천원을 지급한다.</p> <p>②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기간내 2회 회식을 할 수 있으며, 회식비 지출 한도는 1회 30만원 이내로 한다.</p>	<p><u>⑤위원들의 휴업신청시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차량 2대를 렌트하여 운영하도록 한다.</u></p>
<p>제6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식대) 선거관리규정 제51조(별칙) 4항에 의거 지급되지 아니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 할 수 있다.</p> <p>①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시간 종료후 (오후 18시이후) 야근시 식비를 1인당 7천원을 지급한다.</p> <p>②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기간내 2회 회식을 할 수 있으며, 회식비 지출 한도는 1회 30만원 이내로 한다.</p>	<p>제6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<u>운영</u>) 선거관리규정 제51조(별칙) 4항에 의거 지급되지 아니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 할 수 있다.</p> <p>①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시간 종료후 (오후 18시이후) 야근시 식비를 1인당 7천원을 지급한다.</p> <p>②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기간내 2회 회식을 할 수 있으며, 회식비 지출 한도는 1회 30만원 이내로 한다.</p> <p><u>③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근무는 09시부터 당일 18시까지로 하되 위원들의 차량 휴업신청시에는 1일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. 야간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30일을 일할로 계산하여 1.5배로 지급한다.</u></p>

※ 2019년 2월 22일 대의원회 개정 승인자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조합원광장 →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, 개정된 선거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조합 사무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

